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종 류	비 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등기사항 증명서 5. 신원조사 회보서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과 대조·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서 1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2.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정보증서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함
인사관리 서류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와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 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휴가 등)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비고: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 본(해당자에 한정한다)과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1부씩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